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2023.12.6



여수시 조례 제1999호

붙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2호 중 “시민교양강좌”를 “평생교육강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축제”를 각각 “박람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시설·단체를”을 “기관·시설·단체 등을”로 한다.

5. 여수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6.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진남체육관길 74”를 “옹천6길 51”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6호 중 “축제”를 “박람회”로 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테크니션스쿨(이하 “스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여수시와 스쿨 간의 상호연계시스템 구축·운영
4. 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5.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홍보
6. 취업 관련 정보제공·전문가 컨설팅 등 연계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조직의 구성) ① 스쿨에는 원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원장은 스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스쿨의 운영주체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원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사무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스쿨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관

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스쿨의 관리 및 운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 또는 공무상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9조(준용) 제28조에 따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제5조 및 제13조”를 “「여수시 평생학습조례」 제6조 및 제14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평생교육</u>”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u>평생학습관</u>” 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 “<u>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u>” (이하 “<u>성인 진로교육</u>”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p>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여수아카데미 등 시민교양강좌
3. 여수평생학습 축제
4.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전남 평생학습 축제 참가 지원

<신 설>

<신 설>

5. (생 략)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 참여자 및 기관·시설·단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와 같음)

제5조(경비의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평생교육강좌
3. ----- 박람회
4. -----
----- 박람회 -----
5. 여수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6.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기관·시설·단체 등을
-----.

제16조(사무소의 위치)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여수시 진남체육관 길 74에 둔다.

제17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 8. (생 략)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제20조(사무소의 위치) 여수시 사 이버 외국어학습센터의 사무소는 여수시 진남체육관 길 74에 둔다.

<신 설>

<신 설>

제17조(사무소의 위치) -----
----- 웅천6길 51-----
-----.

제18조(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 박람회 -----

7. · 8. (현행과 같음)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삭 제>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 운영 등) ① 시장은 기업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테크니션스쿨(이하 “스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여수시와 스쿨 간의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 운영
4. 학습 운영 및 강사의 수급 관리
5. 수강생의 모집 및 교육 · 홍보
6. 취업 관련 정보제공 · 전문가 컨설팅 등 연계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 제25조(조직의 구성) ① 스쿨에는 원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원장은 스쿨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③ 원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스쿨의 운영주체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원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거나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사무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7조(지도 · 감독 등) ① 시장은

스쿨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 확

보와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관리 ·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
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 개인 등(이

하 “수탁자” 라 한다)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거짓으로 작성 · 제출한 경우

2. 스쿨의 관리 및 운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 또는 공무상 비밀을 위법 · 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9조(준용) 제28조에 따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3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신 설>

<신 설>

제24조 (생략)